

학교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서울남부지방법원
사건번호	2018가소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구상금
원고	●●●●보험 주식회사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9. 1. 8. 원고일부승소	비고	
사건개요	<p>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■■■(이하 '이 사건 피보험자'이라 함)은 2016. 7. 19. 10:00경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◎◎중학교 과학실에서 국자에 설탕을 담아 가열하여 과자를 만드는 과학실험을 하던 중 실수로 국자가 기울어져 가열된 설탕물을 같은 반 학생인 소외 □□□(이하 '피해자'라 함)의 오른팔에 쏟아 부어 우측 전완부(팔꿈치 아래)에 3도의 접촉화상의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음.</p> <p>원고는 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2017. 7. 11. 이 사건 사고의 피해학생 母 측에 치료비 등 금7,500,000원을 지급하고, 상법 제682조에 의거하여 보험자대위규정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음. 이 사고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, 학생 보호·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학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분담비율 30%에 해당하는 금2,250,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는 원고에게 1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12.부터 2019. 1. 8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		
청구취지	<p>피고는 원고에게 2,2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7. 1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</p>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. - 학교의 학생에 대한 보호·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20% 인정된다고 본 사건임. 		